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326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2024. 10. 30.

판결 선고2024. 12. 18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5,454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피해금 35,454,000원이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,

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5,454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권혁재